

# 2025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공고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부산시 창업특례자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25. 2. 28.(금) ~ 자금 소진시까지
- 사업목적 :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
- 사업내용 :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추천지원
- 사업비 : 15억원

## II 지원내용

- 지원내용: 창업 운전자금, 긴급구매자금 용자 추천지원
  - 대출금리: 연 2.7% 고정금리
  - 보증료: 0.6% 고정요율 (납부처 : 신용보증재단)

용자구분	개별 대출한도	상환조건	비고
창업운전자금	50백만원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는 3년일시상환	-
긴급구매자금*	1억원	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연장·회수보증 불가)	- 3개월 이내 매출예정증빙자료 제출업체로 신청국한 - 우량기업과의 매출발생납품 계약서 등 필수제출

\* 긴급구매자금 : 생산(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원자재 구입이 어려운 기업에 단기자금 용자개념. 단, 긴급구매자금의 경우는 매출 예정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므로 사전문의 요망

※ 각 용자구분의 개별 대출한도는 최대 한도이며, 보증심사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III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필수요건 충족 및 선택요건(2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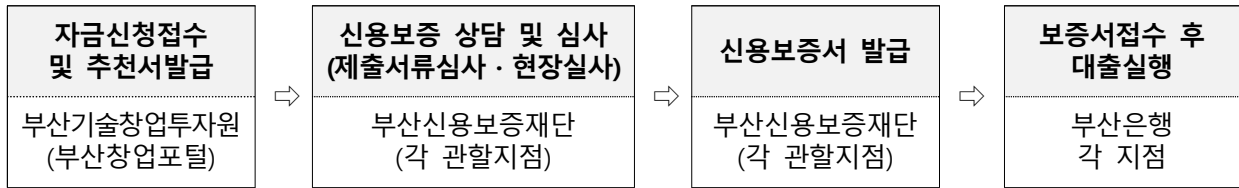
구 분	자격요건
필수요건	<p>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 7년 이내(보증일 기준) 기술창업* 기업 (업종코드 확인 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따른 신사업 분야(참고2) 기업은 10년 이내)</p> <p>&lt;기술창업&gt;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참고1. 기술창업 업종표 해당기업), 부산시 미래전략 산업(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                      수송기기,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등)</p>
선택요건	<p>1.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및 타 대학 및 정부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lt;지역대학 산하 창업지원&gt;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 사업 등                      &lt;타 정부기관 창업지원 &gt;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테크노파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발명진흥원 등</p> <p>2. 부산시 소재 기술창업기업 중 기술력*이 인정되는 자</p> <p>&lt;기술력 인정&gt;                      벤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등</p>

#### \* 기술력 인정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증빙서류
지재권	특허권	특허등록(출원x)	특허등록증
제품 인증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제품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등	인증서
	법정의무 인증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인증서
	기타인증	기타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인증	인증서
기업 인증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IV 지원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지원절차 ※ 평균 1개월 소요



○ 기관별 역할

지원기관	주요역할
부산광역시	(지원총괄) 창업자금 대여 → 부산은행 15억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운영총괄) 신청서 접수 및 자금추천서 발급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창업기업 보증금액, 조건완화 및 우선권 부여
부산은행	(자금대출)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15억원 內

## V 신청방법 및 추천서 발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월 1회 접수, 매월 1일~7일(1주간 접수)

※ 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신청·접수

– 첨부서류

- ① 자금신청서 및 운용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기타증빙
-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⑤ 창업지원확인서(지역 대학 산하 수혜기업,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 수혜기업의 경우)
- ⑥ 기술력 인증 서류(지원사업에 수혜기업이 아닌 경우 제출)

○ 추천일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세부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타 보증기관 통합한도 내(운전자금 50백만원, 긴급구매자금 1억원) 추천서 발급 및 보증지원

\* **통합한도(2억):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체 보증금액**

## 신청제한

- ▶ (신용등급) 9~10등급인자
-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만큼 보증절차 진행 중이거나 보증받고 3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2개 기관 보증 상품 동시 이용 중인 자 또는 각 기금에서 보증받고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 추천통보 : 신청자 이메일로 추천완료 및 추후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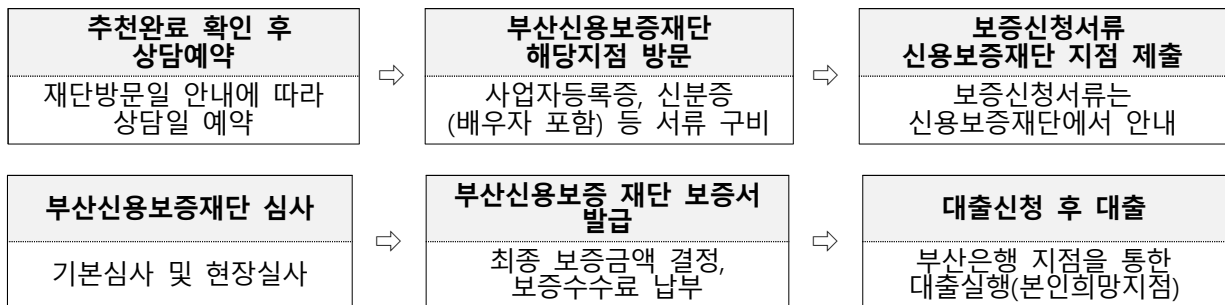
#### <추천서 발급 생략>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추천서 발급은 생략하고, 추천된 자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송부하므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해당지점에 상담일정 예약 후 추후 일정 진행

#### <추천서 기한>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후 이후 절차 진행

### ○ 추천서 발급 이후 절차



※ 각 기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차후 절차.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VI 유의사항

-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후 이후 절차 진행
- 추천서 발급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 상담 및 대출을 미진행 하는 경우 2026년도 특례자금 신청 및 추천 불가

## VII 문 의 처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펀드투자팀 배혜지대리
- 051-715-1761 / hjbae@bsia.or.kr

# 참고 1 업종코드 조회 및 기술창업 업종 구분표

##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업종코드 가 아래표의 기술창업 해당 여부 확인(필수)

### 업종코드 조회 방법

①사업자등록증 종목 확인 ▶ ②한국표준산업분류 종목 검색 ▶ ③분류코드 앞 영문+2개 자리 확인 ▶ ④해당 숫자가 아래의 기술창업 업종 코드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필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조회 ▶ [바로가기 클릭](#)

## 2. 기술창업 업종 코드(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10~34)	(C) 10	식품 제조업	제조업 (C10~34)	(C) 32	가구 제조업	
	(C) 11	음료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12	담배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58	출판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정보 통신업 (J58~63)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0	방송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0~73)	(M) 70	연구개발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M) 71	전문 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사업시 설 관리, 사 업지원 및 임대서비 스업(N75)	(N)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4	1차금속제조업		교육서비 스업(P85)	(P) 85	교육 서비스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86~87)		(Q) 86	보건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예술,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㉔	우주
㉕	차세대 원전
㉖	양자
㉗	사이버 보안